

의안번호	2209899
의 퇴 인	안도걸 의원
회 답 일	2025. 5. 27.
추계번호	25E2240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저도수 혼성주에 대한 종가세율 인하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(세율) 제1항제4호 및 별표	- 저도수 혼성주(증류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이고 알코올분 도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수 범위 내인 것)에 대한 증가세율 인하 (현행) 출고(수입) 가격의 72% (개정안) 출고(수입) 가격의 30%	조세지출

II. 미첨부 근거규정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8조(세율) 제1항제4호 및 별표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개정안에 따라 저도수 혼성주에 대한 주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현행은 증류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¹⁾를 첨가한 것으로서 불휘발분이 2도²⁾ 이상인 주류는 리큐르로 분류하여 증가세율 72% 부과
- 개정안은 현행 리큐르로 분류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알코올분도수³⁾를 기준으로 저도수 혼성주는 기타 주류(개정안 별표 제4호다목)로

1) 당분·산분·조미료·향료·색소·식물·아스파탐·스테미올배당체·솔비톨·수크랄로스·아세실팜칼륨·에리스리톨·자일리톨·효소처리스테비아·우유·분유·유크림, 「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식품첨가물 중 유화제·증점제·안정제 등 성상의 변화 없이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시키는 것 (「주세법시행령」 제3조제1항 및 별표1)

2)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 (「주세법」 제6조제2항)

3)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(分)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 (「주세법」 제6조제1항)

분류하여 종가세율 30% 부과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변화 관련 비용추계를 위해서는 저도수 혼성주에 대한 명확한 알코올분 도수 정의와 함께, 국·외산 리큐르 및 혼성주의 세부 제품별 출고·통관자료가 필요하나, 현재 동 자료가 미집계되고 있어 개정안의 세수효과에 대한 객관적 추계가 어려움
- 개정안은 저도수 혼성주에 대한 알코올분 도수 기준을 하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, 현재 국내 시판 중인 국·외산 리큐르 및 혼성주에 대한 도수별 출고(수입) 가격 및 판매량 통계 자료가 집계되지 않는 상황
 - (국산 주류) 국산 리큐르 및 혼성주에 대한 세부 제품별 출고자료 미집계⁴⁾
 - (외산 주류)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서 '리큐르(liqueur)류와 코디얼(cordial)'(HS 코드 2208.70) 품목은 인삼주(2208.70.1000), 오가피주(2208.70.2000), 기타(2208.70.9000) 등으로 구성되는 가운데, 수입금액 비중에서 기타 품목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현재 세부 제품별 수입 통관자료 미집계

[표 3] 리큐르에 대한 수입 실적: 2021~2024년

(단위: 천달러)

	2021	2022	2023	2024	연평균 ¹⁾
수입금액	18,100	26,238	31,210	28,270	28,573
- 인삼주	1	1	2	0	1
- 오가피주	0	3	-	0	1
- 기타	18,099	26,234	31,208	28,270	28,571

주: 1. HS코드: 인삼주(2208.70.1000), 오가피주(2208.70.2000), 기타(2208.70.9000)

1) 2022~2024년 연평균

자료: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참고로 최근 3년간(2021~2023년) 리큐르에 대한 주세 납부세액은 증가추세(연평균 39.2% ↑)

4)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015년까지 『주류산업』을 통해 주류·회사·상표·도수·용량별 국산주류 출고제품 현황 발표

[표 4] 리큐르에 대한 주세 부과 실적: 2021~2023년 귀속기준

(단위: 억원)

	2021		2022		2023		연평균 증가율
납부세액	251.3	(100.0%)	375.1	(100.0%)	486.7	(100.0%)	39.2%
－ 국산분	89.0	(35.4%)	107.0	(28.5%)	190.4	(39.1%)	46.3%
－ 수입분	162.3	(64.6%)	268.2	(71.5%)	296.3	(60.9%)	35.1%

자료: 국세청 「국세통계연보」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따라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박성은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성은	02-6788-4668	ixsepark@assembly.go.kr